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6. 23.(목) 11:00 6. 24.(금) 조간	배포 일시	2022. 6. 23.(목) 09:00
담당 부서	농업생명정책관실 농기자재정책팀	책임자 담당자	팀 장 이종태 (044-201-1891) 서기관 최승묵 (044-201-1896)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 강화

-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에 따라 '22.6.16.부터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2021.6.15.)됨에 따라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용 트랙터 등 농업기계 검정대상인 42개 기종의 농업기계는 6월 16일부터 농업기계 형식표지판[붙임1]을 부착하여야 한다.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형식표지판 부착과 함께 제조번호를 본체 중 차대에 각인[붙임2]하여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업기계 제조 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는 시행일('22.6.16) 기준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년마다 농업기계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기계화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농업기계의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되었다.

만약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 농업기계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되었다.

농식품부 이종태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 및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표기방법

2. 농업기계 제조번호 표기방법



붙임 1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표기방법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표기 방법

1. 본체에 부착해야 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기 종 명	
형 식 명	
규 격	
제조년월	년 월
제조번호	
제 조 자 (공급자)	제조사/제조국(수입품의 경우) 상호, 전화번호, 주소
용 도	이 기계는 농업용입니다.

- 가. 재료: 금속 재질
- 나. 색: 글씨 및 테두리(검정색), 바탕(은백색)
- 다. 글씨체: 신명조
- 라. 글씨크기: “농업기계 형식표지판”과 “이 기계는 농업용입니다”(16P, 굵은글씨),
이하 내용(14P, 굵은글씨), 상호, 전화번호, 주소의 글자크기는 임의로 설정 가능
- 마. 제조번호 표시: 별표 8의3의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2. 엔진에 부착해야 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용 도	농업용 엔진
형 식 명	
정격출력 /회전수	kW/rpm
최대출력 /회전수	kW/rpm
제조번호	
제 조 자 (공급자)	제조사/제조국 (수입품의 경우) 상호, 전화번호, 주소

- 가. 재료: 금속 재질 또는 테프론스티커
- 나. 색: 글씨 및 테두리(검정색), 바탕(은백색)
- 다. 글씨체: 신명조
- 라. 글씨크기: “농업기계 형식표지판”(14P, 굵은글씨), 이하 내용(12P, 굵은글씨), 상호, 전화번호 및 주소의 글자크기는 임의로 설정 가능
- 마. 제조번호 표시: 별표 8의3 제1호나목에 따른 제조연도부호나 그 밖에 제조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숫자를 포함하여 표시한다.

붙임 2

농업기계 제조번호 표기방법

농업기계 제조번호 표기방법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제조번호를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 가. 제조번호는 제조연도부호, 형식명, 일련번호, 자체관리번호의 순서로 공백 없이 연결하여 본체 중 차대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다만, 자체관리 번호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나. 제조연도부호는 다음 표의 해당연도 부호를 표시하되, 2062년 이후에 제작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2032년도 부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표시한다.

년도	부호	년도	부호	년도	부호	년도	부호
2022	N	2033	3	2044	E	2055	S
2023	P	2034	4	2045	F	2056	T
2024	R	2035	5	2046	G	2057	V
2025	S	2036	6	2047	H	2058	W
2026	T	2037	7	2048	J	2059	X
2027	V	2038	8	2049	K	2060	Y
2028	W	2039	9	2050	L	2061	1
2029	X	2040	A	2051	M		
2030	Y	2041	B	2052	N		
2031	1	2042	C	2053	P		
2032	2	2043	D	2054	R		

- 다. 형식명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관리하는 형식명을 표시한다.
 - 라. 일련번호는 해당연도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동일한 형식명별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순서대로 부여한 번호를 표시한다.
 - 마. 자체관리번호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표시한다.
2. 제1호에 따른 제조번호 표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제조연도부호 형식명 일련번호 자체관리번호
↓ ↓ ↓ ↓
M DEF12X 1234 000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정한 표기방식에 따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제조번호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표시한 것으로 본다.